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3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박정현 · 민병덕 · 박해철
전현희 · 김주영 · 전용기
김성회 · 이강일 · 박홍배
최혁진 · 이광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7조까지”를 “제64조까지,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복종의 의무)”를 “(명령 준수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를 “명령을 준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당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공무원의 정치활동) ①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사표현

2. 「정치자금법」 제10조에 따른 후원금 기부

3. 「정당법」 제23조에 따른 입당

제66조를 삭제한다.

제84조를 삭제한다.

제84조의2 중 “제44조 · 제45조 또는 제66조”를 “제44조 또는 제45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u>은 거부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u></p> <p><u>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u></p> <p><u>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u></p> <p><u>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u></p> <p><u>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u></p> <p><u>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u></p> <p><u>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u></p>
--	---

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제65조의2(공무원의 정치활동) ①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사 표현

2. 「정치자금법」 제10조에 따른 후원금 기부

3. 「정당법」 제23조에 따른 입당

<삭 제>

<p><u>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u></p>	<p><u>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u>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 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u>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u></p>	<p><u>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u></p>	<p><u>제84조의2(별 칙) 제44조 · 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u><삭 제></u></p>					<p><u>제84조의2(별 칙) 제44조 또는 제45조----- ----- ----- -----.</u></p>
-----------------------------	---	--	--	--	--	---------------------------	--	--	--	--	--